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745호
2022. 1. 1.(토)



목 차

◆ 자치법규

[규 칙]

제4457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
제4458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7

◆ 정 정

제2021-735호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노래(코인)연습장, PC방, 영화관, 멀티방·DVD방,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대형유통시설, 콜센터 등 방역강화 조치 수정 고시	11
--	----

자치법규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4457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뉴미디어담당관 및 도시브랜드담당관”을 “뉴미디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5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메타버스 계획 총괄 및 행정서비스 구축·운영

제10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담당관·평가담당관·법무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예산담당관·재정담당관·공기업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를 “기획담당관·시정연구담당관·법무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예산담당관·재정담당관·평가담당관·공기업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로 한다.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재정기획관·기획담당관·조직담당관·시정연구담당관·법무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대외협력담당관·예산담당관·재정담당관·평가담당관·공기업담당관을 둔다.

④ 정책기획관은 시정계획, 조직관리, 법무행정, 대외협력 등에 관하여, 재정기획관은 투자재원 배분·조정, 정부재정 지원·협력, 중장기재정계획 수립·조정, 성과평가 등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제10조제5항제2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제15호로 한다.

제10조제6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한다.

9. 위원회 관리업무 총괄

10. 민간전문가제도 운영

제10조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1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정연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 연구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2. 시정 비전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정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4. 시 투자출연기관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
5. 시립대학교 운영의 지도·지원
6. 우수정책 발굴·관리 및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
7. 도시경쟁력 평가에 관한 사항

제11조제4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9호를 제2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기업의 국내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
19. 기업 및 우수정책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1항제5호 중 “0육성에” 를 “육성에” 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글로벌기업·외국인 정주여건 조성 등 투자 환경개선

제15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 중 “관광정책과·관광산업과·체육정책과·체육진흥과·올림픽추진과를” 을 “관광정책과·관광산업과·체육정책과·체육진흥과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광정책과장·관광산업과장·체육정책과장·체육진흥과장·올림픽추진과장은” 을 “관광정책과장·관광산업과장·체육정책과장·체육진흥과장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9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서울연고 프로구단 지원에 관한 사항
13.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제17조의3제6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10. 장애인 체육에 관한 사항

제1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8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한다.

제69조제4항 중 “열빛총괄과·환경설비과·건축설비과·녹색성장과·시책사업과를 두며, 열빛총괄과장·환경설비과장·건축설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녹색성장과장·시책사업과장은”을 “설비총괄과·환경설비과·건축설비과·도로설비과·설비설계과를 두며, 설비총괄과장·환경설비과장·건축설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도로설비과장·설비설계과장은”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경영관리부·요금관리부·생산부·급수부·시설관리부를 두고 본부장 밑에 안전조사를 둔다”를 “경영관리부·요금관리부·급수부·생산부·시설부를 두고 부분부장 밑에 안전조사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생산부장·급수부장·시설관리부장은”을 “급수부장·생산부장·시설부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관리부장은”을 “시설부장은”으로 한다.

제74조제2항 중 “총무과·기획예산과·홍보과·교육협력과·민원분석과”를 “총무과·기획예산과·홍보민원과·교육협력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시설관리부에 누수방지와·시설과·공간정보과를”을 “시설부에 누수대응과·시설건설과·시설관리과·공간정보과를”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기획관리과·정보자원운영과·인터넷통신과·클라우드센터운영과를”을 “기획관리과·정보자원운영과·인터넷통신과·클라우드센터운영과·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를”로, “인터넷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를 “인터넷통신과장,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에스플렉스센터 운영 및 이용 활성화
2.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시설대관 운영
3. 에스플렉스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제1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4조(원장) 서울기록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록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41조제2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감사위원장이 명하는 감사사항의 처리

제141조제3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8. 감사위원장이 명하는 감사사항의 처리

제141조제4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감사위원장이 명하는 감사사항의 처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제15조, 제18조 및 제1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개방형직위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면직 시까지 개방형 직위로 보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조직담당관”을 “시정연구담당관”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표 제25호의 1. 위원회 신설 재구성에 관한 방침의 협조처란 중 “갈등관리협치과장”을 “조직담당관”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제1호 중 “여성정책담당관”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갈등조정담당관”을 “갈등관리협치과”로, “서울협치담당관”을 “조직담당관”으로 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인사운영 변경사항 반영,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부서 개편 및 정비,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사무분장 정비 및 부서 명칭 변경 등을 위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사운영 변경사항 반영을 위해 도시브랜드담당관(4호), 환경시민협력과장(4호), 지역공동체과장(4호), 서울기록원장(4호)의 개방형 직위 지정 해제(제5조, 제15조, 제18조, 제134조)

나.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부서 개편

(1) 미래 시정의 장기 비전·전략 제시, 정책연구·개발 관련 전담조직인 ‘시정연구담당관’ 신설(제10조)

▶ 기획담당관 내 ‘시정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도시경쟁력 평가’ 사무 및 조직담당관 내 ‘시정연구·시립대·서울연구원·직무발명’ 사무를 시정연구담당관으로 이관

(2) 성과중심 조직운영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 평가담당관을 정책기획관 산하에서 재정기획관 산하로 이관(제10조)

(3) 올림픽 유치일정 변경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올림픽추진과’ 폐지(제17조의3)

(4) 데이터센터 내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 신설(안 제9조 및 제88조)

▶ 스마트도시담당관 내 에스플렉스센터 운영 사무를 데이터센터로 이관하고, 시설운영의 직영 전환에 따라 전담조직 신설

다. 업무이관 및 소관사무 현행화 등 사무분장 정비

- (1) 도시브랜드담당관 내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관련 사무’를 경제정책과로 이관(제5조 및 제11조)
- (2) 스마트도시담당관 내 ‘메타버스 계획 총괄’ 관련 사무 신설(제9조)
- (3) 갈등관리협치과 내 ‘위원회 관리, 민간전문가 운영 사무’를 조직담당관으로 이관(제10조 및 제18조)
- (4) 금융투자과 내 ‘글로벌 투자환경 개선 업무’ 확대에 따른 사무분장 정비(제11조)
- (5) 체육정책과 내 ‘제2서울연고 프로축구단 창단 업무’ 종료에 따라 사무분장 정비 및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신설(제17조의3)
- (6) 체육정책과 내 ‘장애인 체육 관련 사무’를 체육진흥과로 이관(제17조의3)
- (7) 감사담당관, 공공감사담당관 및 안전감사담당관의 소관사무 현행화를 위해 ‘감사위원장이 명하는 감사사항의 처리’ 사무신설(제141조)
- (8) 공공감사담당관 내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무’ 신설(제141조)

라.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내 부서 명칭 변경(제69조)

- 열빛총괄과 → 설비총괄과, 녹색성장과 → 도로설비과, 시책사업과 → 설비설계과

마. 상수도사업본부 부서 재편 및 직제순 변경(제73조 및 제74조)

- (안전조사과) 본부장 → 부분부장 산하로 재편
- (경영관리부) ‘민원분석과’ 폐지, 홍보과 → 홍보민원과 명칭 변경
- (시설부) 시설관리부 → 시설부, 누수방지과 → 누수대응과, 시설과 → 시설건설과 명칭변경 및 ‘시설관리과’ 신설
- 수돗물 공급관리 강화를 위한 건제순 변경
 - ▶ ‘생산부’ : 3번째 → 4번째, ‘급수부’ : 4번째 → 3번째

◆ 서울특별시규칙 제4458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총계란, 일반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총 계	11,635	4,710	356	1,160	5,205	204
-----	--------	-------	-----	-------	-------	-----

일반직 계	10,626	4,653	347	396	5,028	202
-------	--------	-------	-----	-----	-------	-----

별표 1의 5급 소계란, 행정란, 시설란, 행정또는방송통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급 소계	1,434	963	47	57	328	39
행정	658	483	43	24	74	34

시설	195	123			71	1
----	-----	-----	--	--	----	---

행정또는 방송통신	5	3		1	1	
--------------	---	---	--	---	---	--

같은 표 6급 소계란, 행정란, 세무란, 공업란, 시설란, 방송통신란, 시설관리란, 운전란, 행정또는 시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급 소계	3,489	1,877	110	105	1,297	100
행정	1,317	873	83	39	251	71
세무	52	49	2			1

공업	345	110	6	4	223	2
시설	568	314	2	2	232	18
방송통신	54	31	2	4	17	
시설관리	42	8			34	
운전	37	22	1	1	13	
행정또는시설	43	41			2	

같은 표 7급 소계란, 전산란, 공업란, 농업란, 녹지란, 시설란, 시설관리란, 운전란, 행정·공업또는 시설란, 기계운영란, 사무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공업또는방송통신란을 삭제하며, 공업 또는시설란 다음에 공업또는환경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급 소계	3,435	1,385	115	145	1,738	52
전산	130	78	5	9	37	1
공업	420	32	5	12	369	2
농업	5	2			3	
녹지	82	11		2	69	
시설	527	223	2	5	289	8

시설관리	12	4			8	
운전	43	10	1	2	30	
행정·공업 또는시설	44	44				
공업또는환경	1	1				
기계운영	74	5	1		68	
사무운영	77	6	2	1	68	

같은 표 8급 소계란, 녹지란, 방송통신란, 시설관리란, 전기운영란, 기계운영란, 농림운영란, 사무 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급 소계	1,293	189	50	71	980	3
녹지	20				20	
방송통신	17	3		7	7	
시설관리	40	2			38	
전기운영	45	1	1		43	
기계운영	104	2	2	1	99	

농림운영	9			2	7	
사무운영	157	49	13	18	76	1

같은 표 9급 소계란, 시설관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급 소계	540	8	3	4	525	
-------	-----	---	---	---	-----	--

시설관리	278	1		1	276	
------	-----	---	--	---	-----	--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행정수요 증가 분야에의 대응 및 관리운영직 자연감소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위하여 직렬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 수립 지원기능 강화, 상수도시설 안전관리, 에스플렉스센터 직영 운영 등 행정수요 증가분야의 효율적 인력배치를 위한 직렬·직급 간 정원 조정(9명)

※ 본청 → 사업소 정원이체(3명) 포함

나. 관리운영직, 시설관리직 자연감소(퇴직, 공로연수 등)에 따른 결원 보충을 위하여 직렬·직급 간 정원 조정 및 재배치(42명)

정 정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35호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노래(코인)연습장, PC방, 영화관, 멀티방·DVD방,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대형유통시설, 콜센터 등 방역강화 조치 수정 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제2호, 제2의2호 및 제2의4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노래(코인)연습장, PC방, 영화관, 멀티방·DVD방,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대형유통시설, 고위험사업장 중 콜센터 등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711호('21.12.18.)는 본 고시로 대체함

[고시문 수정사항]

6. 위반시 조치사항(추가)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제한조치(운영시간 제한) 위반시 고발조치
(벌금 300만원 이하) (감염병예방법 제80조)
- 붙임(추가)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위반행위 처분기준

1. 적용기간 : 2021년 12월 18일(토) 0시 ~ 2022년 1월 2일(일) 24시
2. 경과규정 등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년 1월 3일(월) 05시까지 적용
 - 방역패스 적용 예외연령 축소* : 2022년 2월 1일(화) 0시 ~ 별도안내 시까지
 -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3. 적용대상

I.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의무)

- 서울시 소재 노래(코인)연습장*, PC방, 영화관, 멀티방·DVD방, 직업훈련기관

- * ①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 중인 시설(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소,
예 : 뮤비방 등)은 방역수칙 동일 적용
② 노래(코인)연습장 형태의 영업을 하는 무허가무신고 업소 포함

II.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 서울시 소재 오락실, 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대형유통시설**

- ** ①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중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종합소매업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예 : 대형마트, 특정 품목(의류·가전·가전용품·서적 등)에 특화된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공구·아파트 상가 등 그 밖의 대규모점포)
 ③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3,000㎡ 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예 : 농협 하나로마트)

III. 고위험사업장

○ 서울시 소재 콜센터 및 보험회사 전화영업점(대리점)

4. 적용내용 : 대상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의 기본방역 수칙,
 추가적용 수칙, 사적모임 수칙 등 준수 의무화

< 추가적용 수칙 : 아래 시설에 한 함 >

- 노래(코인)연습장 : 21시 ~ 익일 05시 운영중단
- PC방, 영화관, 멀티방,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 22시 ~ 익일 05시 운영중단

< 사적모임 수칙 >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명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명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명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식당·카페에 한해 접종미완료자*는 아래와 같은 제한 내 이용 가능 ◦ (전국)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 과 동반 이용 불가) * PCR음성확인, 연령상 예외 등(18세 이하<2022.2.1.부터는 0~11세 이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예외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접종미완료자 ◦ 관리자·운영자는 식당·카페에서 2명 이상의 모임에 접종미완료자가 1명을 초과하는지 확인하고, 확인 시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예시) 식당·카페 이용 예시 (※ 대형유통시설 등 시설 내 식당·카페 이용시 동일 적용)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명 + 접종완료자 등 0명 ⇒ 1명(○)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명 + 접종완료자 등 1명 ⇒ 2명(X)	

< 사적 모임 적용 예외 >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노래(코인)연습장 기본방역 수칙

※ ①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 중인 시설(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소, 예: 뮤비방 등)은 방역수칙 동일 적용

② 노래(코인)연습장 형태의 영업을 하는 무허가·무신고 업소 포함

<위험요인>

- ▲ 노래할 때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기 어려움
-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노래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 음료 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 노래하며 춤을 추는 경우 거리두기가 어렵고, 다른 사람과 밀접 접촉이 발생
- ▲ 오랜 시간 일행 간 함께 체류하는 경우 접촉 시간이 길어짐
- ▲ 마이크, 노래코드북, 리모콘, 탭버린 등의 물품 공유가 빈번하며 매번 소독이 어려움
- ▲ 방 내부는 창문이 없는 등 좁고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환경이 다수
-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 적용	① 방역수칙 계사·안내	
	◦ 기본방역 수칙 계사·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계사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②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같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③ 출입자 명부 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원칙** - 출입명부(수기)는 4주 보관 후 폐기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같음 ** 단, 개인 휴대전화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작성 가능(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이용)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 계도기간(2021.12.6.~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④ 마스크 착용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물·무알콜음료 섭취 시 예외	
	⑤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준수
	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권고 사항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손씻기) 공용물품 등 만진 후 손씻기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공공간 수칙 적용	◦ 권고사항 준수
추가 적용	◦ 21시 ~ 익일 05시 운영중단	◦ 운영시간 제한 준수

□ PC방(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기본방역 수칙

<위험요인>

- ▲ 음식 섭취, 흡연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짐
- ▲ 다른 사람과 함께 이용 시 함께 대화, 식사 등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 · 밀접 접촉 가능
- ▲ 키보드, 마우스 등의 물품 공유가 빈번하며 매번 소독이 어려움
- ▲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환경이 존재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 적용	① 방역수칙 게시안내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②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원치자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③ 출입자 명부 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원칙** - 출입명부(수기)는 4주 보관 후 폐기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단, 개인 휴대전화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작성 가능(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이용)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 계도기간(2021.12.6.~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④ 마스크 착용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⑤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단,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가능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가능
	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권고사항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권고사항 준수
추가 적용	◦ 22시 ~ 익일 05시 운영중단	◦ 운영시간 제한 준수

□ 영화관 기본방역 수칙

<위험요인>

- ▲ 연극, 뮤지컬, 오페라 공연 등 노래와 말을 하는 공연은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 ▲ 음식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클래식 공연 제외)
-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 공연 관람 전·후 함께 식사 등 모임으로 이어지는 사례
- ▲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시설
-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 응	① 방역수칙 계사·안내	
	◦ 기본방역 수칙 계사·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계사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②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원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③ 출입자 명부 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원칙** - 출입명부(수기)는 4주 보관 후 폐기 ※ 예매자(단체예매시 예매자 1명)에 한해 명부작성 예외 및 안내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같음 ** 단, 개인 휴대전화는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작성 가능(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이용)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 계도기간(2021.12.6.~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④ 마스크 착용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⑤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단,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별도 상영관 또는 구역(화차)을 달리하여 시설 운영하는 경우 취식 가능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단,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별도 상영관 또는 구역(화차)을 달리하여 시설 운영하는 경우 취식 가능
	☞ 2021.12.1. 0시부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도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⑦ 추가적용 수칙	
	◦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함성·구호·합창) 금지 ◦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도록 안내 ◦ 좌석 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	◦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함성·구호·합창) 하지 않기 ◦ 지정된 좌석 이탈하지 않기 ◦ 방역수칙 미준수 시 퇴장 조치에 협조
권고사항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권고사항 준수
추가적용	◦ 22시 ~ 익일 05시 운영중단	◦ 운영시간 제한 준수

□ 멀티방 · DVD방 기본방역 수칙

<위험요인>

- ▲ 음식 섭취, 흡연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 다른 사람과 함께 이용 시 함께 대화, 식사 등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 밀집 · 밀접 접촉 가능
-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 게임기 등의 물품 공유가 빈번하며 매번 소독이 어려움
- ▲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환경이 존재
-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 용	① 방역수칙 게시안내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②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③ 출입자 명부 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원칙** - 출입명부(수기)는 4주 보관 후 폐기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단, 개인 휴대전화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작성 가능(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의 작성(이용)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 계도기간(2021.12.6.~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④ 마스크 착용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⑤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권고 사항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시설 내 게임기구 등 이용시) 주사위, 카드, 게임기계, 테이블 등 공용물품 사용 전 후 손 소독 및 딜러, 플레이어가 있는 카드 게임 시 가급적 장갑 착용 또는 손 소독하기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권고사항 준수
추가 적용	◦ 22시 ~ 익일 05시 운영중단(멀티방)	◦ 운영시간 제한 준수(멀티방)

□ 직업훈련기관 기본방역 수칙

<위험요인>

- ▲ 강의, 대화(어학학원 등)는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 (기숙 학원 등) 음식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 (관악기 학원) 악기 연주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 노래, 연기, 무용, 댄스학원에서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기 어려움
- ▲ 악기, 연기, 무용, 댄스 학원 등은 학습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신체 접촉이 동반될 가능성
-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 학원생의 주기적 방문은 잦은 재노출 기회로 이어짐
- ▲ 시설에 따라 지하에 위치, 창문이 적은 시설 등 환기가 어려운 시설 가능
- ▲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학원에서 노출을 통해 여러 학교로 전파 가능
- ▲ 규모가 큰 학원(대규모 입시학원, 고시학원 등)의 경우 지역·권역을 넘나드는 이용자 간의 노출 가능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용	① 방역수칙 계사안내	
	◦ 기본방역 수칙 계사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계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②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원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같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③ 출입자 명부 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원칙** - 출입명부(수기)는 4주 보관 후 폐기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같음 ** 단, 개인 휴대전화는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작성 가능(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의 작성(이용)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 계도기간(2021.12.6.~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④ 마스크 착용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⑤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⑥ 추가적용 수칙	
	◦ 전일제 시설에서 식사 - 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직업훈련기관 중 식사하는 경우, '식당카페' 방역수칙 준수 및 안내	◦ 전일제 시설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식당카페' 방역수칙 준수
	⑦ 기숙시설 운영	
	▲기숙시설 운영금지, 단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직업훈련기관은 아래수칙 적용> ① 입소자 (공통) 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훈련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 (입소前) 10일간 예방격리 권고(접종완료자, 2일 이내 PCR음성확인자 예외),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접종완료자 예외)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접종완료자 예외) ③ 방문자 : 접종완료자 또는 2일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자 소지자 외 시설 출입 금지 원칙	
	권고 사항	◦ 권고사항 준수
	추가 적용	◦ 운영시간 제한 준수

□ 오락실 기본방역 수칙

<위험요인>

- ▲ 음식 섭취, 흡연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 다른 사람과 함께 이용 시 함께 대화, 식사 등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 밀집·밀접 접촉 가능
-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 게임기 등의 물품 공유가 빈번하며 매번 소독이 어려움
- ▲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환경이 존재
-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응	① 방역수칙 계사·안내	
	◦ 기본방역 수칙 계사·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② 출입자 명부 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③ 마스크 착용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④ 밀집도 완화 등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접종완료자 등만 입장)하는 시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 시설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 밀집도 제한 준수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⑤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권고 사항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시설 내 게임기 등 이용시) 주사위, 카드, 게임기계, 테이블 등 공용물품 사용 전 후 손 소독 및 딜러, 플레이어가 있는 카드 게임 시 가급적 장갑 착용 또는 손 소독하기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권고사항 준수
추가 적용	◦ 22시 ~ 익일 05시 운영중단	◦ 운영시간 제한 준수
기타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 아래 사항 준수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원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원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대형유통시설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기본방역 수칙

〈위험요인〉

- ▲ 물건 설명 등 대화는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 ▲ 이용자가 많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 시설내 부대시설(음식점 등) 등 이용하는 경우 각 시설별 위험 요인 상존
-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용	① 방역수칙 게시·안내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② 출입자 명부 관리 ※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예: 하나로마트)대상, 준대규모점포는 권고·전통시장 제외)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③ 마스크 착용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④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⑤ 추가적용 수칙	
	◦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금지 및 안내	◦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이용 금지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권고사항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등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밀집도 완화)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안내 * 대기 줄을 서는 경우,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최소1m) 이상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 - 대기인원 20명 이하 운영 안내, 방문예약제 등 적극 활용(권고) - 이용자 간 거리유지를 위해 충분한 통로 확보 - 밀집도 높은 구역은 한방향 이동 및 실외판매부스 설치 등으로 인원분산 유도(권고) ◦ (집객행사) 대규모 세일 등 집객행사 자제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권고사항 준수

□ 콜센터 기본방역 수칙

<위험요인>

- ▲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무 환경일 경우 증상 발견이 늦어짐, 연쇄감염 발생
- ▲ 전화 응대는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 ▲ 근로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 근로자들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 시설 내 공용 공간(휴게실 등), 공용 물품(전화기, 헤드셋, 마이크 등) 사용을 통한 직원 간 접촉 가능
- ▲ 직원 간 동호회 등 소규모 모임을 통한 밀접 접촉 가능
- ▲ 주기적인 소독과 환기 미흡
- ▲ 외부 방문객을 통한 감염 전파 가능성

구분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공통수칙	① 방역수칙 준수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의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방역수칙 준수(의무)

구분	방역관리자 · 운영자 수칙	종사자(근로자) · 방문자 수칙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증상확인 협조, 증상 있을 경우 출입하지 않기
	③ 방문자(근무자 외) 출입자명부 작성 · 관리	
	■ 모든 방문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 ■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 모든 방문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
	④ 마스크 착용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의무)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의무) ■ 사업장 상황에 맞게 근로자의 마스크 여분 충분히 확보 및 비치	■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의무)
	⑤ 음식섭취 자제	
	■ 식사공간 이외에서 음식물 자제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식사공간 이외에서 음식물 자제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⑥ 손씻기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의무)	■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⑦ 밀집도 완화	
	■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의무) ■ 근로자 간 2m(최소1m)간격 유지 ■ 점심시간 시차제 운영 - 식사시간을 2개조 이상으로 분리 운영(운영대장 작성) * 가급적 조별 인원 균등분할 * 외부식당 이용시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조치 인원 준수 안내	■ 근로자 간 2m(최소1m)간격 유지 ■ 점심시간 시차제 참여 - 조별 식사시간 준수 * 외부식당 이용시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조치 인원 준수
	⑧ 환기하기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구를 활용하여 환기횟수 증가 ■ 자동환기시스템 갖춘 경우 상시가동(외부공기 유입 가급적 최대)하고 자연환기 병행 * 기계설비 안전관리로 휴동하는 경우 자연환기 실시	■ 회의, 작업 중 지정된 시간에 환기 후 근무

구분	방역관리자 · 운영자 수칙	종사자(근로자) · 방문자 수칙
	⑨ 소독하기	
	■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책자, 공용물품(전화기, 헤드셋, 마이크 등), 출입문, 손잡이, 난간, 사무용기기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개인별 사무공간(책상 등) 및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개인물품 소독 철저 ■ 공용물품(전화기, 헤드셋, 마이크 등) 소독 후 사용하기
	⑩ 기타	
	■ 방역관리자 지정 · 운영(의무)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의무)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의무) * 증상 유·무 유급휴가(병가, 연가휴가 등) 활용하도록 권장	■ 증상확인 협조 ■ 증상 있을 경우, 방역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퇴근 또는 출근자제
추가 수칙	① 근무형태	
	■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를 적극 활용
	■ 업무특성 상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반영하여, 충분한 휴게시간을 부여 -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외 1시간마다 5분 또는 2시간마다 15분씩 휴식	■ 충분한 휴게시간 이용
	②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 출장, 행사	
	■ 출장 최소화,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 행사 등 가급적 온라인(영상)으로 실시 ■ 대면으로 회의, 워크숍, 교육, 연수 등 개최 시 개인위생수칙(마스크 착용, 손 위생, 거리유지 등) 준수 안내 ■ 사업장 내 모임, 회식 자제	■ 출장 최소화 하기, 회의, 워크숍, 교육, 연수, 행사 등 가급적 온라인(영상)으로 참여 ■ 대면으로 회의, 워크숍, 교육, 연수 등 참여 시 개인위생수칙(마스크 착용, 손 위생, 거리유지 등) 준수 ■ 사업장 내 모임, 회식 자제
	③ 구내식당, 통근버스, 기숙사, 시설내 공용공간	
	■ 해당 방역수칙 준수 안내	■ 해당 방역수칙 준수

□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구분	관리자 · 운영자 ·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흡연실	▶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 대화 금지 안내	▶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 흡연실 내 대화 금지
화장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 사용 전/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 사용 전/후 손씻기
탈의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 손소독제 배치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 공용물품 만진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권고)
샤워실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공용물품* 배치 자제 * 로션, 수건, 드라이어기 등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 ▶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
휴게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 대화 자제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 대화 자제
탕비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
민원창구	▶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

5.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의2호, 제2의4호 및 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6. 위반시 조치사항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제한조치(운영시간 제한) 위반시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이하)(감염병예방법 제80조)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지침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시설 운영자 방역지침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지침 위반(10만원)
-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 폐쇄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운영중단, 시설 폐쇄명령이 가능함
-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년 12월 18일(토) 0시 부터

8.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10.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대형유통시설 02-2133-5258)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직업훈련기관 02-2133-5463)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02-2133-5384)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금융투자과(콜센터 02-2133-5248)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노래연습장 02-2133-9221,
 PC방·오락실 02-2133-9213, 영화관·멀티방·DVD방 02-2133-9217)

붙임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위반행위 처분기준(질병관리청)

※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중수본) 및 지자체별 행정명령에 따라 적용기준 변경 가능

주요 방역수칙 (공통)	위반 시 처분 기준		처분 근거 (감염병예방법)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① 집합금지	고발 조치	고발 조치	· 법 제49조제1항 제2호 · 법 제80조제7호 (300만원 이하 벌금)
② 영업시간 준수	고발 조치	고발 조치	
③ 사적모임 인원제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과태료	· 법 제49조제1항 제2호의2 · 법 제83조제2항 및 제4항제1호 (3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행정처분**)
④ 거리두기(단계별 이용 인원 제한 등)	과태료 및 행정처분	과태료	
⑤ 출입명부 작성·관리	과태료 및 행정처분 (단순 관리미흡 등은 예외 가능)	과태료	
⑥ 음식섭취 금지	과태료 및 행정처분 (단, 관리자·운영자 몰래 이용자가 반입한 경우 예외 가능)	과태료	
⑦ 마스크 착용 준수	즉시 시정 안할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	즉시 시정 안할 경우 과태료	
⑧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우선 계도	우선 계도	
⑨ 환기하기			
⑩ 소독하기			
⑪ 손씻기			
⑫ 유증상자 출입제한			

* 법 제4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경우, 고발 조치도 가능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